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19일, 서미화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8.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8.23.)

상정, 축조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11.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4.11.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미화 의원)

장애인은 장애의 종류와 개인별 특성에 따라 개별성을 띠기 때문에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피해회복지원 과정에서 학대피해 장애인 및 학대사실에 관련된 정보를 관계기관 등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학대피해 장애인의 피해회복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피해회복지원을 위해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의 다양한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나아가 최근 장애인학대 적발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내용에 포함하는 한편,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정의된 “사회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시설의 장과 종사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하여 장애인 사회서비스 확장에 따른 신고의무자 범주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연광석)

개정안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법정사항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전 부처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행법에 따라 수립·시행 중인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9대 정책 분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리 보장 강화’가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른 30대 중점과제에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 강화’가 별도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는바,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종합계획 법정사항 중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근거하여 장애인학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임.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는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활동지원인력,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장애인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를 장애인학

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하여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개입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아울러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 사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15년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신고 및 조사, 피해자 지원이 이전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해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향후 지원과정 및 내용, 계획 등에 관하여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의료지원, 심리지원,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예방교육지원, 학업지원, 중재지원, 진정지원, 상담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장애인쉼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음.¹⁾

그러나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불명확하여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고, 예산·인력·지원기관 수가 부족하며, 지역사회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점 등이 나타나고 있음.²⁾

-
-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장애인의 안전 확보, 장애인학대의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피해장애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⑤ 피해장애인의 보호자·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는 제2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에 참여하여야 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장애인학대사건을 총괄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관련해서는 현장조사에만 편중되어 상대적으로 피해자 지원은 단편적이고 불충분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학대피해장애인에게 각종 복지서비스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통합적 관점에서의 사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³⁾

이에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학대피해장애인의 회복과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원활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에서는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있는 동 협의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의사결정 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중립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다만, 통상적인 입법례에 따라 안건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행할 수 있는 기피 신청 및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이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회피에 관한 규정도 함께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이호선, 송남영, & 정한별. (2022).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체계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31-63.

3) 김영연. (2022.12.21.). 법무부·복지부, 장애인학대처벌특별법 제정 필요성 항목소리. 함께걸음. (https://www.cowalknews.co.kr/bbs/board.php?bo_table=HB41_2&wr_id=170).

추가적으로 개정안은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이 포함된 1주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주간으로 하여,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6월 22일로 정한 이유는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인화학교 학생 성폭력 피해 최초 상담이 이루어졌던 2005년 6월 22일⁴⁾과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근거⁵⁾가 마련된 날(2015년 6월 22일)을 기념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4) 이 사건은 후에 ‘도가니’라는 제목으로 소설 및 영화화되어 널리 알려짐.

5)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